▶特 輯—壬午軍亂 110 周年紀念, 壬午軍亂을 해부한다

壬午軍亂은 어떻게 마무리지어졌는가

金 祥 起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修員)

머 리 말

임오군란이란 1882년 6월의 都捧所事件이 계기가 되어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을 말한다. 이 군란은 군인들에게 10개월 이상의 월급이 지불되지 않아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閔氏政權의 탐오와 실정에 대하여 그동안 차별대우를 받아오던 군인들이 일으킨 폭동이었으며, 척사파와 개화파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의 결과 노정된 무력투쟁이기도 하였다. 또한 개항 후 일본의 정치·경제적 침투에 반감을 지니고 있던 일부 시민들이 군인들의 봉기에 합세하게 됨에 군란은 반침략적인 성격까지 띄게 되었다.

한편 大院君은 이를 이용하여 민씨정권을 타도하고 재집권을 기도하고자 군민들을 지휘하게 됨에 국내 정계의 대혼란을 가져왔다. 군민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은 심지어 민비의 살해를 기도하였으며 일본공사관을 습격하여 일본공사일행을 일본으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에서 군대를 파견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였으며, 청국에서도 이를 수습하고자 군함을 파견하니 인천 앞바다는 바야흐로 一觸卽發의 전운마저 감돌았다. 비록 서로 군사력의 시위로 끝나고 말았으나 이 과정에서 일본은 군사력의 열세를 드러내 보였다. 일본은 그후 10여년간 군사력 확충을 통하여 이때 조선에서 실추된 국력의 만회를 위하여 切齒腐心하였으니 임오군란은 청일전쟁의 서막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군인들의 도봉소사건은 일파만파 그 영향이 너무나 크게 미쳐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고 말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임오군란에 관하여는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1] 이글에서는 일부 진행된 연구물을 이용하여 도봉소사건 이후 임오군란의 경과를 약술하고, 임오군란의 결과 미친 영향에 대하여 기왕의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壬午軍亂의 경과

도봉소사건이란 1882년(고종 19년) 6월 5일 宣惠廳 도봉소에서 武衛

1) 壬午軍亂에 관한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田保橋潔, 〈壬午政變の 硏究〉(『靑丘學叢』21, 1935)
田中吉直, 〈日韓關係의 一斷面〉(『日本外交史硏究, 1957)
李瑄根, 〈制度改革과 壬午軍亂〉(『韓國史(최근세편)』 진단학회, 1961)
山邊健太郎, 〈壬午軍亂에 대하여〉(『歷史學硏究』257, 1961)
彭澤周, 〈壬午軍變과 日淸兩國의 대책〉(『明治初期日淸關係의 硏究』 1969)
金鍾圓,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에 대하여〉(『歷史學報』32, 1966)
_____, 〈淸의 對朝鮮 적극책의 機緣〉(『李海南博士華甲紀念論叢』 1970)
權錫奉, 〈大院君 被囚문제에 대한 재검토 (상·하)〉(『人文學硏究』3·5, 중앙대 인문학연구소, 1976·1977), 〈임오군변〉(『한국사』16, 국사편찬위원회, 1981)
白鍾基, 〈壬午軍亂을 에워싼 청일양국의 對韓政策에 관한 一管見〉(『大東文化硏究』16, 1982)
姜在彦, 〈朝鮮의 開國과 壬午軍亂〉(『季刊 三千里』30, 1982)
高橋秀直, 〈壬午事變과 明治政府〉(『歷史學硏究』601, 1989)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營 소속의 舊訓練都監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호남지방에서 稅穀이 도착하자 그간 군인들에게 주지 못하였던 군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군인들을 도봉소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군인들은 비록 그동안 정부의 처사가 못마땅하였지만 한달치라도 받아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하였던 것이다.[2]

군인들은 밀린 월급을 수령하기 위하여 6월 5일 아침부터 도봉소 앞에 집결하였다. 그러나 정작 군료로 받은 것은 겨와 모래가 섞여 있고 양이 반도 안되었다. 아무리 굶주렸다고 하더라도 군인들은 이러한 군료를 받을 수는 없었다. 이때 군료의 지급을 담당한 자는 선혜청 당상 閔鎌鎬의 하인들이었다. 이들은 오히려 주인의 권세를 믿고 군인들에게 극히 불손하게 대하였다. 마침내 군인들의 불만이 폭발하였으며, 그중에서 구훈련도감 포수였던 金春永·柳卜萬·鄭義吉·金命俊 등이 이들을 구타하게 되고 군료의 지급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당시 민겸호는 궁중에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참여 중이었는데, 이 소

2) 이때의 군인들의 불평과 심정을 극명하게 드러낸 자료가 있어 여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즉 張道斌이 지은 『壬午軍亂과 甲申政變』(경성, 덕흥서림)에 의하면 군사 3명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가 : 우리 군사된 놈들은 사람이 아니야, 남들처럼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고 아니꼬운 자제들에게 하대를 받고, 그래도 어디 도적이 낫다면 우리더러 잡으라 하고, 난리가 낫다면 우리더라 막으라 하고, 평상시에도 우리더러 성문을 지키라 하고, 영문을 지키라 하고, 그러구는 저이들은 밤낮 풍류에 쌓여 진탕으로 놀고, 아! 좋은 것은 저이들 차지요, 죽을 때는 우리더라 가라고, 요새도 좀 보게 민망난인지 김망난인지 나라 돈을 퍽 훔쳐가지고 기생방에서 다 없이해 버렸다네.

나 : 이 사람 그만두게. 나는 어디서 난리가 나기를 바라네. 어서 난리가 나서 나부터 전장에 나가서 어서 죽고 말게. 아무리 하면 우리가 잘 살날이 있겠나. 우리나라가 잘 될 수가 있겠나. 예라 그 무엇이라고 무슨 당상이라는지, 무슨 판서라는지 하는 자제들 참아 못보겠네. 우리들 월급은 벌써 열석달을 못받았는데 그 자제들은 날마다 용미봉탕 금수능라에다가 계집을 열 스물 데리고 놀기만 하데. 이 사람 자네도 어서 죽게. 자네도 죽어야 편안하리.

다 : 아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다 못난 사람들이로세. 그까짓 사람들 잘 살고 못 살던 이야기는 왜 하나. 우리 잘 살을 이야기를 하지. 요사이에 들으니 호조에서 그래도 우리들 월급을 준다네. 월급을 주거든 받아 먹고, 또 무엇을 하던지 우리도 남처럼 잘 살아보세.

물론 이 내용은 위의 저자가 지어낸 대화일 것이다. 임오군란 직전의 군인들의 심정을 잘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식을 듣고 주동자를 체포하게 하였다. 곧이어 김춘영 등은 고문을 당하고 그들 중 2명이 사형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춘영의 부 金長孫과 유복만의 동생 柳春萬이 주동이 되어 通文(狀頭, 柳春萬)을 작성하여 무위 각영에 발송하기에 이르렀다.

6월 9일 김장손과 유춘만은 무위영 군인들을 이끌고 병조판서 겸선혜청당상인 민겸호의 집으로 갔다. 민겸호에게 동료의 석방을 호소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일부의 민중들이 참여하였으며 흥분한 군민들은 민겸호를 찾지 못하자 가옥을 파괴시키고 말았다. 사태가 급변하자 김장손과 유복만은 운현궁으로 가 대원군에게 동료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사태를 수습해 주기를 청하기에 이르렀다. 대원군은 그간의 사태 추이를 주의깊게 살폈으며, 이들을 이용하여 민씨정권을 무너뜨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대원군은 김장손·유춘만에게 密計를 지령하는 한편, 그의 심복인 許煜을 군인으로 변장시켜 군민들을 지휘케 하였다. 이후 군민들의 행동은 조직적이고 대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선 이들은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장하고 포도청을 급습, 동료들을 구출하였다. 이어서 의금부를 습격하여 척사상소를 올려 체포된 白樂寬을 비롯한 죄수들을 풀어주었다.[3]

군민들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일본세력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別技軍의 설치와 그후 군제개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이 모두 일본의 침략적 정책때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군민들은 우선 별기군 본부인 下都監을 습격하여 일본인 교관 堀本少尉를 포함한 수명을 살해하였다. 이어서 군민들은 일본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공관원 수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공사일행은 방어가 불가능해지자 海軍軍醫 佐川晃 등에게 명령하여 공사관을 방화케 하고 인천을 거쳐

3) 白樂寬(1846-1883), 자 : 景敎, 호 : 秋江, 保寧五賢중의 1인)은 충남 보령출신의 유생이다. 그는 정부의 개화정책을 반대하여 수차례 반대상소를 올렸다. 1882년 6월에는 서울의 남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 척사상소를 올렸으며, 이 일로 구금된 것이다. 군민들은 그를 '白忠臣'이라 호칭하면서 추앙하였으며 난을 일으키고 우선적으로 그를 구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청군의 개입으로 군란이 진압된 후 백낙관은 체포되었으며, 1883년 8월 29일 '叛上不道罪'로 참형을 당하고 말았다. 그의 문집으로 『秋江遺稿』가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일본으로 탈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다음날인 6월 10일 군민들의 행동은 더욱 강렬해졌다. 수천의 군민들은 영의정 李最應의 집을 습격하여 그를 살해하고 이어서 궐내에 난입하였다. 군민들은 입궐하는 민겸호를 비롯하여 경기관찰사 金輔鉉을 살해하였으며 계속하여 민비의 행방을 찾았다. 그러나 민비는 홍재희(홍계훈)의 기지로 탈출에 성공하여 충주의 민응식 집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민비와 대원군의 갈등과 대립속에서 고종의 태도는 우유부단하게 이끌리는 형편이었다. 난군의 궁내 진입에 미쳐 고종은 대원군의 입궐을 요청하였으며 自責敎旨를 내리고 모든 권한을 대원군에게 이양하였다.

대원군은 이와 같이 군란을 이용하여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새 정권을 확립하는 데 여러 문제가 놓여져 있었다. 우선 민비의 처리에 대한 것이었다. 민비의 가마가 부서져 있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遺骸를 찾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은 민비가 죽은 것으로 간주, 국장을 선포하였다. 이는 군민들의 흥분상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기는 하겠으나, 그보다는 민비가 생존해 있더라도 감히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4]

대원군은 우선적으로 軍制를 개혁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의 五營을 복설하였으며 통리기무아문을 혁파하고 三軍府를 설치하였다. 또한 대원군은 짧은 집정기간이었지만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국고의 고갈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각 지방의 미납세곡을 거두어 들일 것을 명하였다. 이어서 민폐의 하나인 辛甘菜의 징수를 엄금하였다. 또한 鑄錢을 금지시키고 都賈를 비롯한 각종 민폐를 금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대원군의 서정개혁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군민들 역시 대원군의 정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5]

4) 黃玹, 『梅泉野錄』권 1 상, 국사편찬위원회, 1955, pp. 59 - 61.
5) 權錫奉, 〈임오군변〉(『한국사』16, 국사편찬위원회 1981), pp. 408 - 409.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대원군은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제도의 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인사의 개편을 실시하였다. 그의 장자인 이재면을 훈련대장 겸 호조판서·선혜청당상으로 임명하여 병권과 재정권을 장악하였다. 영의정은 洪淳穆을 유임시켰으며, 우의정에는 申應朝를 임명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재의 부족을 절감하였으며 그의 이종이며 백성의 신망을 받고 있던 신응조마저 우의정 취임을 거절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따라 李晩孫·金平默·姜晉奎·鄭顯德·黃載顯 등 척사운동으로 체포된 인물들을 비롯한 887명을 석방하여 인재를 보충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정부고관들은 민씨정권에 기울어져 있었다.

대원군의 집권을 반대하는 세력은 의외로 강했다. 민비는 충주에서 비밀리에 고종과 연락을 취하여 청군의 원병을 요청케 하였으며, 청국에 체류중인 영선사 金允植은 이 소식을 듣고 청정부에 곧바로 대원군을 구축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청 정부 역시 1876년 병자수호조약의 체결 이후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조선에서의 우월권(종주권)을 회복하고자 기회를 엿보던 중이었다.

청군의 파견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馬建忠·丁汝昌이 이끄는 제1진이 3척의 함대를 거느리고 1882년 6월 27일 인천 앞바다의 월미도에 정박하였다. 이어 吳長慶이 이끄는 3천의 부대는 7월 7일 남양만 마산포에 도착하여 7월 10일에는 서울로 들어왔다. 남대문 밖에 진영을 구축한 청군은 사태의 수습에 들어갔다. 결국 청측에서는 최선의 수습책으로 대원군의 체포를 결정하였다. 드디어 오장경·정여창·마건충 등 청장들이 7월 13일 정오에 대원군을 예방하였으며 이들은 귀로에 대원군을 초대하였다. 대원군은 이날 오후 정현덕의 만류를 뿌리치고 청국의 진영에 답례의 형식으로 방문하였으나 결국 마건충이 이끄는 청군에 의하여 체포되어 곧바로 天津으로 호송되고 말았다.

대원군이 李鴻章을 만난 것은 7월 29일이었다. 이홍장은 대원군을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심문하였다. 결국 이홍장은 8월 10일 "대원군은 야심을 갖고 형 이최응 및 척신 민겸호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탈취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였다. 그는 과거 오랫동안 권세를 잡고 있었으므로 그를 따르는 당파와 지지세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해 두면 변란이 거듭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그를 直隸保定府에 종생 감금하여 조선에 환국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청 황제에게 주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원군은 천진의 보정부에 감금되었던 것이다.[6] 대원군의 被囚는 곧 대원군정권의 몰락을 의미하였으니 집권한 지 불과 33일만이었다.[7]

이와 같이 청국이 무력으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고 더욱이 당시 실권자이며 고종의 친부인 대원군을 강제로 납치하여 4년간이나 구금시킨 일은 실로 명백한 주권침탈이며 역사적인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壬午軍亂의 결과

대원군정권의 몰락은 곧 민씨정권의 부활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민씨정권에게 당면한 과제 역시 산적해 있었다. 우선 청군의 도움을 받아 군란의 수습에 들어갔다. 청군의 군민에 대한 진압작전은 7월 16일 새벽 3시경부터 시작되었다. 구군인들의 주 거주지인 왕십리와 이태원에 군대를 배치시켜 여기에 대항하는 군민들과 아침부터 전투를 벌였다. 결국 약 2천여명에 달하는 청의 육군과 대포부대에 의한 공격에 군민들은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고 참패를 당하였다. 체포된 자들은 간단한 심문과 腰牌를 차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鄭完隣 등 11명이 참수당하였다. 이와 같이 청군에 의한 다수 군민의 처형은 공포분위기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정부는 계속하여 군란의 지도자급들도 체포하였다. 이들 중 김장

6) 白鍾基, 〈앞의 글〉 pp. 166 - 170.

7) 權錫奉 교수는 대원군정권이 단명에 그치게 된 원인으로, 첫째로 민비의 국상절차를 강행하는 동안 귀중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 점, 둘째로 고종 친정 10년간 대원군 일파가 제거당하여 새 정권에 참여할 인재가 부족했던 점, 셋째로 청국에 의한 대원군의 납치 등을 들고 있다. 권석봉, 「앞의 글」, p. 409.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손 · 정의길 · 홍천석 · 강명준 · 유복만 · 허씨동 · 정쌍길 등 8명이 모반대역부도죄로 8월 24일 군기시 앞길에서 陵遲死에 처해졌다. 또한 이들과 연좌된 친척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엄형에 처하도록 하였다.[8] 한편 이들에 대한 체포는 다음해까지 이어졌으니 1883년 6월 10일에는 허욱 · 장태진 · 장순길 · 김창영 · 장재식 · 유홍엽 · 이봉학 등 7명이 군기시 앞길에서 같은 죄로 처형되었다.[9] 도봉소사건의 주도자였던 김춘영도 결국 체포되어 1885년 8월 28일 이영식과 함께 능지사에 처해졌다.[10]

대원군파로 지목되어 처형당한 인물 또한 다수 있다. 정현덕 · 조병창 · 조우희 · 이회정 · 조채하 · 이재만 · 이원진 · 백낙관 · 이돈응 · 오하영 · 강범수 등이 그들이다. 이 중에서 정현덕은 대원군이 특히 신임하였던 인물이었다. 동래부사를 역임한 그는 대원군이 입궐한 다음날인 6월 10일 석방되어 6월 29일 우승지, 7월 4일에는 형조참판에 임명되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대원군 정권이 무너지면서 다음해 4월 27일 조채하 · 이재만 · 이원진 등과 함께 사사되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7월 25일 민비의 생존을 공포하고 국상을 위한 삼도감을 철폐시키고 왕비봉영절의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왕비는 8월 1일 충주에서 창덕궁으로 환궁하였다.[11]

한편 정치제도의 개편을 단행하여 외무를 관장하는 통리아문(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과 국내사무를 관장하는 통리내무아문(통리군국사무아문)을 신설하였다. 그 외에 주전소 · 혜상공국 · 기연해방사무 · 각항 해관 그리고 정부기구의 재정비를 위한 減省廳이 설치되었다. 또한 군제의 개편을 단행하여 新建親軍營을 설치하였다. 이 부대는 국왕친위대로서 4영으로 확대되었다.

다음에 조선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처리해야 하였다. 일본공사는 군

8) 『承政院日記』 고종 19년(임오) 8월 24일, 8월 25일.
9) 『承政院日記』 고종 20년(계미) 6월 10일.
10) 『承政院日記』 고종 22년(을유) 8월 28일.
11) 『承政院日記』 고종 19년(임오) 8월 1일.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민들에게 쫓겨 공사관을 탈출하여 6월 15일 長崎에 도착한 직후 일본 조정에 군란의 상황과 일본인의 피해상황을 보고하였다. 일본의 조야에서 군란에 대한 태도는 매우 격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黑田淸隆같은 자는 征韓論을 거론하기까지 하였으며, 당대 일본 최고의 계몽사상가인 복택유길 역시 『時事新報』에 여러 차례 논설을 발표하여 군란과 청에 대한 분개의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일본의 부국강병과 조선침략을 주장하는 자들은 군비를 충당하기 위한 헌금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본참모본부 편찬과에서는 이해 8월 새삼스럽게 『任那考』를 간행하였다. 모두 12면의 小冊子에 불과했지만 임나에 관한 역사상 최초의 단행본이라는 점이 주목되며, 이는 곧 軍民의 침략의식을 提高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음이 틀림없다.[12] 이러한 여론에 玄洋社를 중심으로 하는 정한론자들은 의용병을 모집하는 한편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일본정부는 花房공사에게 4척의 함대와 1개 대대를 인솔하여 인천으로 향하게 하였으며, 이들이 인천항에 도착한 것이 6월 29일이었다. 이 부대는 조선에 대한 무력시위와 함께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한 군대였다. 그러나 花房공사가 막상 인천 앞바다에 당도하니 청의 군함이 이미 도착해 있었으며[13] 자신들이 오히려 수적으로 훨씬 열세인 것을 알고 강력한 대응을 자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화방공사는 7월 7일 고종을 謁見하고 8개 조항의 요구안을 제출하였을 뿐이었다.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는 기간에 그 요구안은 접수될 리가 없었다. 그러나 대원군정권이 무너짐에 일본은 이 요구안을 관철코자 하였다. 조선정부에서는 청의 마건창을 찾아가 중재해 줄 것을

12) 金聖昊, 〈任那·三韓·三國論 硏究〉(『韓國의 社會와 歷史』 崔在錫敎授停年退任紀年念叢 pp. 671-673, 1991).

13) 일본군함선발대 金剛號가 長崎를 출발한 것은 6월 23일이지만 濟物浦 앞바다에 당도한 날자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청군함이 이곳에 도착하는 27일보다 1, 2일 앞서 내도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花房공사가 후속군함 明治丸을 타고 제물포에 입항한 것은 6월 29일이었으므로 청군함보다 2일 늦게 도착한 셈이 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청하였으나 청측에서는 이 협상안에 대하여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결국 7월 17일 일본과 협상에 타결을 보았으나 이것은 일본의 요구를 거의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였다. 단지 손해배상금 50만환의 납부를 5년 거치로 한 것과 함흥과 대구의 시장개방을 제외한 것 등의 우리측 요구가 반영된 정도였다. 濟物浦條約이라고 불리는 이 조약 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4]

제 1. 지금부터 20일 이내에 조선국은 兇徒를 포획하고 거두를 엄히 징계할 것. 일본국은 입회하여 처단하되 만약 기일내에 포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본국에서 처리할 것임.

제 2. 일본관리로서 해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후례로써 장례할 것.

제 3. 조선국은 5만원을 지급하여 해를 입은 일본관리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지급하여 위로할 것.

제 4. 흉도의 폭거로 인하여 일본국이 받은 손해 및 공사를 호위한 수륙병비중에서 5십만원은 조선국이 보상할 것. 매년 10만원씩 지불하여 5년이내에 완납 청산할 것.

제 5. 일본공사관에 병사 약간을 두어 경비케 할 것. 兵營의 설치와 수선은 조선국이 책임짐. 만약 조선의 병민이 규율을 지켜 1년 후 일본공사가 경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는 철병해도 무방함.

제6. 조선국은 大官을 파견하여 국서를 보내어 일본국에 사과할 것.

일본측에서는 조선정부에 대하여 위의 조약 제1조에 의거하여 일본인 살해범과 공사관 습격범의 체포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7월 29일 孫順吉·孔致元·崔奉圭 등 3명이 일본외무2등경부 岡部一과 외무7등속 淺山顯藏이 입회한 가운데 모화관 앞에서 효수되었다. 동시에 이진학·조응순·안홍준 등은 유배에 처해졌다.[15] 또한 이 제물포조약이

14) 『高宗實錄』 고종 19년(임오) 7월 17일.
15) 『日省錄』 고종 19년(임오) 7월 29일.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체결된지 1개월여후인 9월 20일 비준이 완료된 〈조일수호조규 속약〉에 의하면 조선정부는 이로 인하여 부산·인천항을 더욱 널리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일본공사와 영사는 물론 직원까지도 조선내의 자유여행이 허락되는 특권을 보유하게 되었다.[16]

또한 일본측은 위의 조약을 체결하면서 척화비를 철폐해줄 것과 인국과의 수교의 의의를 전국에 포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고종은 8월 5일 전국에 명을 내려 척화비를 뽑아버리도록 하였다.[17] 이로써 일본은 군란으로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배상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한편 조선정부에서는 위 조약 제6조에 의하여 朴泳孝 등을 수신사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파견하여 군란을 사과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한편 조선정부에서는 조영하를 진주사로, 김홍집을 부사로 청국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청군의 출동에 사의를 표하고 아울러 8월 22일에는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였다. 전문 8조의 이 조약은 서두에서 "이번에 정한 바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속국을 우대하는 뜻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각국이 모두 均霑할 수 없다"라 하였다. 따라서 이 조약은 청국과 조선의 종속관계를 명문화하여 조선내에서 청국의 우위를 인정해 준 것에 불과하다.[18]

이를 계기로 청국은 조선에 대한 정치·군사·경제 등 모든 면에서 적극적인 간섭에 들어갔다. 우선 조선의 관제개혁에서부터 군사제도까지 개편한 청국은 경제부문에도 손을 뻗쳤다. 이로써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조선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했던 일본의 세력은 전락하고 그 자리를 청국이 대신하게 되었다.

맺 음 말

17) 『承政院日記』, 고종 19년(임오) 8월 5일.
18) 金鍾圓,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에 대하여〉(『歷史學報』32, 1961, pp. 150 - 165).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임오군란은 군인과 일부의 시민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폭동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의금부와 포도청에 구금된 죄수들을 구출하고 그 여세를 몰아 封建勢力의 구축을 위한 무력시위에 들어갔으며, 급기야는 민비의 살해를 시도하는 등 마치 혁명의 성격을 띄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반란은 숭문경무정책의 결과 나타난 조선왕조의 末期的 증세이기도 하였으며, 척사파들의 개화정권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폭동을 일으킨 군민들은 이를 혁명으로 이끌 만한 이념과 지도자의 부족으로 대원군에게 협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이 폭동은 혁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대원군세력과 민씨정권과의 정권투쟁의 양상을 보이면서 政變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 군란을 통하여 이득을 본 것은 청국뿐이었다. 청국은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에 빼앗겼던 조선에 대하 종주권 강화에 성공하였으며,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진출이 또한 확대되었다. 청국의 진출은 곧 강화도조약 이후 조선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세력의 후퇴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 후퇴를 政略的으로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항전의식을 고양, 세입을 증대시켰으며, 이를 통하여 1882년에 26척이었던 함대를 1893년까지 32척으로 증대시켜 청의 北洋艦隊의 위력에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임오군란은 청일간의 갈등의 서막이 되었다고 하겠다.

임오군란은 조선정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대원군세력의 재집권 실패는 척사세력의 몰락을 가져왔으며, 반면에 민씨정권이 起死回生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민씨정권은 군란을 자책하고 이를 계기로 '國利民福'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적에 대한 숙청만을 일삼았다. 또한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하여 청군을 이용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청국에 대한 의뢰는 더욱 높아졌으며 그 결과 청국에 종속화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한편 여기에 대하여 소장 개화파관료들은 청으로부터 독립하여 내정과 외교를 혁신하고자 주장하여 守舊派와의 암투가 노정되었으며 이것은 2년 후 甲申政變으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로 표면화되었다 할 수 있다. 결국 임오군란으로 조선은 국력만 소모되었으며 자주성마저 상실케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한편 임오군란으로 척사파들은 그 세력을 거세당하고 말았다. 대원군의 피체와 척화비의 철거는 그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881년 소위 辛巳斥邪論을 폈던 척사유생들 역시 민씨정권의 위세속에서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척사유생들은 자신들의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상소의 방법을 통한 척사주장은 전연 효과가 없으며 이제부터는 직접적인 무력투쟁을 전개하여 민씨정권과 외세를 물리쳐야 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1883년 임오군란의 주도자들이 처형당한 후 지방에서 일단의 抗日의 조짐이 나타남은 그 시초라 하겠다. 이러한 움직임은 1894년 청일전쟁을 계기로 하여 항일의병투쟁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